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규정

1993. 12. 29 개정 1996. 1. 1 개정
1997. 3. 8 개정 1998. 11. 11 개정
2002. 9. 5 개정 2004. 4. 13 전문개정
2010. 12. 23 개정 2012. 12. 7 개정
2015. 1. 2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정관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관공선 재해복구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관공선(地方官公船)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아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2. 감항능력(堪航能力) : 선박의 운항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에 대한 검사를 관련법규에 의해 정기적으로 필하고 안전운항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완비함으로써 통상의 해상 위험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공제등록(共濟登錄) : 회원이 선박의 사고로 발생한 물적·비용 손해보상 및 승선자에 대한 배상을 보상받기 위해 공제가입하는 것을 말한다.(2010. 12. 23 개정)
4. 공제가액(共濟價額) : 공제등록 선박의 재산가액으로서 공제등록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5. 공제등록금액(共濟登錄金額) : 선박의 공제등록시에 회원이 신청한 공제가액으로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6. 공제금(共濟金) : 공제등록 선박에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에게 공제등록금액의 범위안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보상금(재해복구비)을 말한다.
7. 공제회비(共濟會費) : 공제등록금액에 공제요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8. 공제요율(共濟料率) : 공제등록금액에 대한 공제회비의 비율을 말한다.
9. 선체(船體) : 조타장치, 거주위생설비, 배관장치, 통풍환기설비, 방수배수설비, 항해설비 등과 제10호의 기관 및 제11호의 의장품에 해당되지 않는 선박의 각종 설비를 말한다.
10. 기관(機關) : 선박의 추진기를 작동시키는 주기관과 발전기, 펌프, 냉동기, 자동원격조

중장치 등의 보조기관을 말한다.

11. 의장품(儀裝品) : 전자·통신·의료·소방장비 등의 선박에 장치된 설비품을 말한다.
12. 잠재하자(潛在瑕疵) :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관습적인 일체의 검사방법으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가 일상적으로 점검하였으나 발견할 수 없는 결함을 말한다.
13. 전손(全損)·분손(分損) : 선박에 사고가 발생하여 당해 선박의 멸실 또는 원상복구비용이 공제등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전손(전부손해)이라 하고, 이에 이르지 않는 손해를 분손(부분손해)이라 한다.
14. 정기등록(定期登録)·수시등록(隨時登録) : 공제등록일이 매년 1월1일부터인 경우를 정기등록이라 하며, 선박의 건조, 구입, 관리전환 등의 사유로 연도중간에 등록하는 경우를 수시등록이라 한다.
15. 승선자 배상 : 회원이 공제등록한 관공선에 탑승한 승객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공제회가 손해보험사와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여 보상하는 사업을 말한다(2010.12.23 신설).

제3조(적용범위) 지방관공선(이하 “선박”이라 한다)의 공제등록 및 공제회비 납부와 공제금 지급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공제등록 및 회비산정

제4조(공제등록의 대상) 회원이 공제등록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2010. 12. 23 개정)

1. 공제등록 대상은 선박(선체·기관·의장품) 및 승선자로 한다. 다만, 선박의 경우 공제기간중 통상의 해상위험에 견딜 수 있는 감항능력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2010. 12. 23 개정)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선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등록할 수 없다. 다만, 공인감정기관의 선령 연장평가시 또는 공제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목조선(목강선)은 진수후 15년
 - 2) 강선 및 F.R.P선과 기타 재질로 제작된 선박은 진수후 25년

제5조(공제등록신청서류 제출) ①회원이 선박의 신규 공제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제회의 해당 사·도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관공선 공제등록 신청서 1부.(2010. 12. 23 개정)
2. 의장품등록 명세표 1부.(2010. 12. 23 개정)

3. 그 밖에 공제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회원은 공제등록된 선박중 관리전환 또는 구조·용도 변경 등의 수시등록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등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회원은 공제등록된 선박의 다음년도 공제등록을 위하여 매년 12월 30일까지 지방관공선공제 정기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기간이 만료됨에도 변경, 해지에 대한 회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정기등록으로 자동갱신 한다.(2010. 12. 23 개정)

제6조(공제기간) ①공제기간은 정기등록의 경우 매년 1월 1일 0시부터 12월 31일 24시까지로 한다.(2010. 12. 23 개정)

②수시등록의 공제기간은 공제등록이 접수된 날 익일 0시 또는 회원이 지정한 날의 0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 24시까지로 한다.(2010. 12. 23 개정)

제7조(공제등록금액의 책정) ①회원은 선박의 장부가액(실건조 또는 구매가액) 또는 공인기관 및 공인감정사의 감정가액, 공제등록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공제등록금액을 정하여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공제등록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공제등록금액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등록금액 평가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제회비의 산정) ①공제회는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규칙의 공제회비요율표에 의하여 공제회비를 산정하며, 수시등록하는 경우의 공제회비는 일할계산한다.(2010. 12. 23 개정)

②회원이 공제등록된 선박의 노후화로 인해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하여 대체할 경우에는 기 공제등록 선박의 무사고할인율을 승계·적용할 수 있다.

③공제등록기간 중 지급공제금의 합계가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무사고할인율을 지속하여 적용한다.(2015. 1. 27 신설)

제9조(공제회비의 납부) ①정기등록 공제회비는 매 회계년도 개시후 3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수시등록 공제회비는 공제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등록 공제회비의 경우 1월말일까지의 등록분은 3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12월중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12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제회비는 공제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제등록증권의 교부) 공제회는 공제등록된 선박에 대하여 공제등록증권을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10. 12. 23 개정)

제11조(공제등록의 해지) ①회원은 공제기간중 선박의 매각, 폐기, 관리전환 등의 공제등록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제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등록을 해지하는 경우에 공제기간의 종기는 회원이 지정한 날로 하며, 잔여기간의 공제회비는 일할계산하여 환급한다. 다만, 회원이 공제등록 해지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지통보서가 공제회에 접수된 날을 공제기간의 종기로 본다.

제12조(공제등록의 소멸 및 무효) ①공제등록 선박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제등록의 효력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에 소멸된다.

1. 제1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고이외의 원인에 의한 멸실
2. 제1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멸실
3. 선박의 해체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등록을 무효로 한다.

1. 공제등록 당시 선박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공제등록금액이 공제가액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된 부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한 날로부터 잔여기간의 공제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등록이 무효인 경우에는 공제회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공제금 지급

제13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고) ①공제등록 선박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제등록금액의 범위내에서 공제금을 지급한다.(2010. 12. 23 개정)

1. 침몰, 좌초, 충돌, 풍파의 이상한 작용 등의 해상고유위험에 의한 사고 또는 화재로 인하여 멸실·손상되거나 구조(救助)시에 발생한 사고(입거 또는 상가중의 사고 포함)로 인한 손해
2.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방불명으로 인한 손해

②승선자배상에 가입한 선박은 탑승한 승객의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규칙에서 정하는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2010. 12. 23 신설)

제14조(공제금의 지급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

1. 공제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일 이전에 발생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원 또는 승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3. 전쟁,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변란으로 인한 손해
4. 선박의 피격, 나포, 억류로 발생한 손해
5. 지진, 화산, 방사능 및 원자력으로 인한 손해
6. 선박의 자연소모 또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다만, 잠재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
7. 선박운항에 관한 면허정지, 운항정지된 상태에서 이를 위반 운항하여 발생한 사고
8. 무자격 선장 및 기관장의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
9. 타 선박과 충돌하여 타 선박에게 배상하여야 할 사고
10. 공제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기간중 발생한 사고
11. 사고발생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제금 지급신청서류의 허위 및 증거의 위조 또는 변조
2. 사고발생시 제15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사항을 조사할 수 없을 때

제15조(사고발생시의 의무) 회원은 공제등록 선박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손해의 경감 및 사고 확산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사고 선박의 선명,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원인, 손해정도를 지체없이 공제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선 유선 통보, 후 서면 통보)
3.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에 필요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제금의 지급신청) ① 회원은 공제등록 선박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관공선 재해복구공제규칙에서 정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2010. 12. 23 개정)

1. (2010. 12. 23 삭제)
2. (2010. 12. 23 삭제)

3. (2010. 12. 23 삭제)
4. (2010. 12. 23 삭제)
5. (2010. 12. 23 삭제)
6. (2010. 12. 23 삭제)
7. (2010. 12. 23 삭제)

②(2010. 12. 23 삭제)

③승선자배상에 가입한 선박에서 발생한 배상사고의 경우 회원이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양식에 따라 공제금을 신청하고, 보험사가 회원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2010. 12. 23 신설)

제17조(공제금의 지급기준) ①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사고로 인하여 지급하는 공제금은 전손 또는 분손과 손해방지비용 및 구조비로 한다. 다만 그 공제금의 합산액은 공제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2010. 12. 23, 2015. 1. 27 개정)

②전손의 경우에는 공제등록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분손의 경우에는 선체·기관·의장품별 공제등록금액 범위내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text{※ 공제금 지급액} = \text{공제등록금액} \div \text{공제가액} \times \text{손해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 지급액 산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전문회사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④승선자배상은 공제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보상금액 안에서 공제금을 지방관공선재해복구 공제규칙에서 정하는 약관에 따라 지급한다.(2010. 12. 23 신설)

⑤공제금의 지급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사고가 동시에 집중발생하여 공제금 산출의 지연 또는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 12. 23 개정).

제18조(전손처리 기준) ①선체 및 기관의 손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손으로 본다.

1. 선박이 멸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손해로 인하여 원형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일 때
2. 손해정도가 기술적으로 수리복구가 가능하나 수리비용과 구조비(손해방지비용 포함) 등의 합산액이 공제등록금액을 초과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을 때
3. 손해율이 100분의 75이상의 분손일 때

②의장품의 손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손으로 본다.

1. 인양여부에 불구하고 선체와 함께 침몰된 때
 2.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거나 그 연소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선체와 함께 멸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손해로 인하여 원형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일 때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품의 전손은 개개의 의장품을 단위로 하여 판정한다.
- ④선체와 함께 침몰된 의장품이 인양된 경우의 잔존가치는 공제금액의 20%로 인정처리할 수 있다.

제19조(분손과 면책) ①의장품의 경우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잠재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잠재적 하자가 있는 부분 자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잠재적 하자로 인하여 다른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공제금을 지급한다.

제20조(행방불명의 기간) ①공제등록 선박이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

1. 무동력선 및 총톤수 20톤미만의 동력선은 30일
2. 총톤수 20톤이상의 동력선은 60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방불명기간은 출항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③행방불명된 선박이 현존하고 있음이 판명되었을 때 이미 지급한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1조(손해방지비용 등의 지급기준) ①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방지비용과 구조비는 공제등록금액의 공제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②손해방지비용과 구조비는 각각 공제등록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구조비의 경우 구조된 선박의 잔존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승선자배상 등록 선박에 대해서는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규칙에서 정하는 약관에 따라 지급한다.(2010. 12. 23 신설)

제22조(손해방지비용 등의 지급범위) ①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방지비용과 구조비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제등록 선박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까운 안전정박 장소까지의 예인에 필요한 비용
2. 구조자에 대한 보수, 기타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한 필요비, 유익비 또는 손해비용(소송비용 및 자재비 등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는 손해방지비용과 구조비로 계상하지 아니하며 일체 보상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승선자배상등록한 선박에 대해서는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규칙에서 정하는 약관에 따른다.(2010. 12. 23 개정)

1. 임의구조시 구조에 종사하는 경우 희망이익 상실
2. 임의구조시 사고에 대한 구조에 출동하였으나 구조불능의 비용
3. 승무원 또는 그 밖의 승선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
4. 연료 또는 선박에 적재한 것을 방기(放棄)함으로 인한 손해

제23조(공제금 지급액의 조정) ①공제금지급과 관련하여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해복구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제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총돌공제특약

제24조(총돌공제특약) ①제14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돌공제특약에 등록한 경우에는 타 선박과 충돌 또는 이로 인하여 다른 선박이 또 다시 제3의 선박과 충돌하여 그 선박 또는 적하에 손해가 발생하여 회원이 이 충돌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일정금액을 타인에게 배상하였을 경우에 공제등록금액의 범위내에서 손해배상금 전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공제금의 지급은 공제등록금액의 공제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은 회원이 제3자에게 배상을 하기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소송 또는 분쟁의 중재를 타인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제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손해에 가산하여 보전의 대상으로 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과의 합산액이 공제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총돌공제특약 공제회비 등) ①총돌공제특약 공제등록에 따른 공제회비는 총돌공제특약 공제요율에 의하여 산정한다.(2010. 12. 23 개정)

②총돌공제특약의 공제등록, 공제회비의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내지 제12조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총돌공제특약 공제금의 지급범위) ①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회가 손해배상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돌공제특약에 등록된 선박의 단독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 당해 충돌로 인한 손해를 회원이 배상하거나 부담한 경우
2. 총돌공제특약에 등록된 선박의 과실과 다른 선박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는 그 과실의 비율(과실의 경중을 판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과실의 비율을 동일한 것으로 본다)에 따라 충돌로 인한 손해를 회원이 배상하거나 또는 부담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선박 또는 이에 적재된 적하가 아닌 물건이나 이익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2. 선원 또는 승선자의 사망, 신체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
3. 관할관서에서 충돌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인양 및 철거명령에 따른 비용손해
4. 항구시설 또는 부두위의 화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5.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오염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

제 5 장 보 칙

제27조(기금적립) ①지방관공선 공제기금의 적립은 공제회비, 이식금, 기타수입 등으로 한다.

제28조(공제금 부족재원의 충당) ①공제금 지급액이 적립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또는 다른 공제사업의 적립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제사업의 적립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위임 및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 및 지침으로 따로 정하거나 관련법규 또는 해상보험의 약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1993. 12. 29 규정 제87호 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기존의 선박보험 또는 다른 공제회에 가입되어 계약기간이 종료된 지방관공선은 이 규정 시행일에 불구하고 이전에 본 공제회에 청약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도 이 규정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다.

부 칙(1995. 12. 26 규정 제99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에 관련되는 정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3. 8 규정 제106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 3. 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기공제 청약 된 선박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공제청약 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11. 11 규정 제112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9. 5 규정 제129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등록된 물건은 이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 4. 13 규정 제144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23 규정 제180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7 규정 제192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27 규정 제213호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규칙

제정 2010.12.28. 개정 2012.12.20.
개정 2017.02.10. 개정 2017.12.15.
개정 2018.12.21. 개정 2019.12.19.
개정 2021.12.10. 개정 2023.12.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제회비 요율, 공제금 산정, 공제등록 및 승선자배상의 약관, 요율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제등록

제2조(등록 및 변경신청 서류) ①회원이 선박 및 승선자를 공제등록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관공선 공제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의장품등록 명세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그 밖에 공제회에서 요청하는 서류

②회원은 공제등록된 선박중 관리전환 또는 구조·용도 변경 등의 수시등록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승선자배상 등록 내용을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등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회원은 공제등록된 선박의 다음년도 공제등록을 위하여 매년 12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지방관공선공제 정기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기간이 만료됨에도 변경, 해지에 대한 회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정기등록으로 자동갱신 한다.

제3조(공제회비의 산정) ①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규정 제8조 및 동 규정 제25조 제3항에 규정한 공제회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공제회비를 산정하며, 수시등록 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 한다.

1. 선박은 「별첨1」의 지방관공선 공제회비 요율서에 의한다.<개정 2012.12.20., 2017.12.15., 2019.12.19., 2021.12.10., 2023.12.27.>

2. 승선자는 「별첨2」의 승선자배상공제회비요율서에 의한다. 다만, 자치단체의공제손해율에 따라서 추가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다.<개정 2017.2.10.>

②회원이 공제등록된 선박의 노후화로 인해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하여 대체할 경우에는 기

존 공제등록 선박의 무사고할인율을 승계·적용할 수 있다.

제4조(공제회비의 환불) 공제등록의 해지 및 효력이 소멸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잔여기간의 공제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공제금을 지급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공제등록선박이 멸실된 경우 공제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공제등록증권의 교부) 공제등록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제등록증권을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공제회비의 납부유예) 회원이 예산미확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부과된 공제회비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납부유예는 공제등록기간 중으로 한다.

제3장 사고처리 및 공제금지급

제7조(선박사고 공제금 지급신청) 회원은 공제등록 선박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
2. 사고사실 증명·확인서(사고의 양상에 따라 그 업무를 주관하거나 관계있는 관공서 또는 법률에 의하여 그 업무의 취급을 인정받은 자가 발행하는 사고사실 및 경위에 대한 증명·확인서라야 한다. 다만, 동 서류의 제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경우 전문수리업체의 소견서로 대신할 수 있다.)
3. 선체·기관·의장품별 재해사진 각1매 이상.
4. 수리비명세서(견적서)와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선박의 감항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박검사증) 1부.
6. 사고발생경위 보고서(자체보고 서류)
7. 그 밖의 증빙서류

제8조(승선자배상 공제금 지급신청) 회원은 공제등록 선박의 승선자 배상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금(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보험금청구서(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
2. 공제회가 발급한 지방관공선공제등록증권 사본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한 증명서류
4. 그 밖의 손해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

제9조(승선자배상공제 약관의 적용) ①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규정 제13조 2항, 제17조 4항, 제21조 3항, 제22조 2항의 약관은 「별첨3」으로 한다.<개정 2017.2.10.>

②제1항의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손해보

협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선박사고의 손해사정위임) 회원으로부터 사고통보를 접수한 때에는 손해사정법인에 위임하여 공제금을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1.12.10]

제11조(참여기관의 선정 등) ① 기관의 선정은 공제사업 개발 참여,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참여기관의 지분은 신용평가등급, 사업안정성, 재무건전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할 수 있으며, 매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다만, 사업 운영에 장애가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에 대하여 참여 제한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18.12.21.>

부 칙<규칙 제181호, 2010.12.28>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212호, 2012.12.20>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292호, 2017.2.1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313호, 2017.12.15>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417호, 2018.12.2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446호, 2019.12.19>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487호, 2021.12.1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547호, 2023.12.27>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지방관공선 공제등록 (신규 ☐) 신청서
(변경 ☐)

관 선 이 제 비 복 원 항	선 명		회 원 (자치단체)	기 관 명				
	총 톤 수	톤		주 소				
	선 종			전화번호				
	선 질		관리부서명		주 정 박 지	주 소		
	선박 정원	명	운항구역			전 화		
	최초등록일		최근사고일			항구명		
	건조년월일 (선 령)	년 월 일 (년 월)	치 수(m) (장×폭×고)					
주 기 관	제작회사 (형 식)	()		보 조 기 관	제작회사 (형 식)	()		
	마 력 (HP)				마 력 (HP)			
	회 전 수 (RPM)				회 전 수 (RPM)			
	속 력 (노 트)	평속:			속 력 (노 트)	평속 :		
	제 년 월 일	년 월 일			제 년 월 일	년 월 일		
재 산 평 가	평가 방법	☐ 장부가격(간조·구매가) ☐ 시가 ☐ 평가표 ☐ 기타						
	평가 금액 (원)	선 체			의 장 품	()중, ()점		
		주 기 관				공 제 등 록 희 망 일	년 월 일	
		보조기관			총 들 특 약 가입 여부		가 입() 미가입()	
		의 장 품						
		계						
관공선 공제등록 신청금액			승 선 자 배 상 가 입	보상 한도	1인당(만원)	1사고당(만원)		
				승선자배상-대인				
				구조비담보-대인				
				승객의 제3자 대인				
				관습상의 비용				
				재물손해담보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공선의 공제등록을 신청합니다. 신 청 자 _____ 직인 _____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귀하								

주) 선박의 재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준공내역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장품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그 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지방관공선(선박) 의장장품 등록명세표

○ 관공선명 :

연번	품명	규격	제조회사	형식	수량	평가금액(원)
합계						

[별지 제3호 서식]

()년도 지방관공선공제(선박) 정기등록 신청서

확인자(소속, 직, 성명): (인)

○ 자치단체명: 서울특별시 본청

작성자(소속, 직, 성명): (인)

연번	선박명	등록사항 변경 여부 (해당란에 ○표)					
		변경 없음	변경 사항				
			톤 수	선 체	기 관	의장품	기 타

주) 전년도대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변경된 사항만을 기재하여 제출(의장품의 변경내역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년도 지방관공선(승선자배상) 정기등록 신청서

○ 자치단체명:

확인자(소속, 직, 성명): (인)

작성자(소속, 직, 성명): (인)

연번	선박명	등록사항 변경 여부						
		변경 없음	변경 사항					
			대인보상	구조비담보	승객인 제3자대인	관습상비용	재물손해	기타

주) 기 등록되어 있는 승선자배상 보상한도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변경하고자 하는 보상한도 금액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 변경 사항을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지방관공선 공제금 지급신청서

I. 사고상황

- 회 원 명 : _____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사고종별 : _____
- 사고정도 : 전손(), 분손()
- 공제금 송금처 : _____

II. 사고선박 현황

선	명		용	도	
선	박	고	유	번	호
운	항	구	역		
관	리	부	서	명	
			손	해	율
			신	청	금
			액		천원

- 사고발생 원인:

위와 같이 지방관공선 공제금을 신청합니다.

이
의
의

신청자

직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귀하

주) 사고발생원인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상세히 기재하고 선체, 기관, 의장품별 파손된 부분의 재해사진을 첨부하여 제출.

승선자 배상사고 신고서

회원명			
관공선명		계약번호	
사고일시	년 월 일	사고시각	
사고장소			
사고경위			
사고통보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전화 : 팩스 :		
자치단체보험처리담당자	소속 부서 : 전화 : 팩스 :		
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피해사항	1. 재물 피해 ☐ 피해목적물 ☐ 피해추산액 2. 신체 장애 ☐ 피해자 상태		
기타			

[별지 제7호 서식]

귀중

승선자배상 보험금 청구서

공제종목 : 계약자 :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하셔야 할 서류

서 류 명	비 고

년 월 일자 보험사고와 관련 년 월 일 시 분에 사고현장에 도착한 사고조사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필요서류를 안내 받았습니다.

확인 : (인)

아래의 은행계좌로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보험금 수령을 위한 계좌는 반드시 실명계좌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험금청구인(지방자치단체 또는 피해자) : (인)
피 보 험 자(지방자치단체장) : (인)

[별지 제7-1호 서식]

합 의 서

甲 : 피해자 성명(상호)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주 소 _____

(피해자의 친권자 : 성 명 _____ (인) 피해자와의 관계 : _____)

※ 대리인이 합의시에는 신분증 복사본, 주민등록등본을 합의서에 첨부 바랍니다.

乙 : 가해자 성명(상호) _____

주 소 _____

합의금액 : 금 _____ 원정 (₩ _____)

년 월 일 _____에서 발생한

_____의(○신체손해, ○대물파손) 사고와 관련하여 甲과 乙은 위의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향후 同 사고와 관련하여 甲은 乙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합니다.

◇ 합의조건

1. _____

2. _____

년 월 일

위 피해자 : _____(인)

피해자의 대리인 : _____(인)

위 가해자 : _____(인)

[별지 제7-2호 서식]

귀중

위 입 장(사망)

사고일시 :

사고장소 :

피 해 자 :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

□ 위임받으시는 분

성 명 :

(인)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위임사항

1.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상기 위임받는 자는 가해측과 일체의 민사상 합의에 대한 피해자측의 민사상 권리 및 합의금 수령권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는다.
2. 합의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피해자측의 의무와 합의에 따른 법적책임, 또는 합의후의 법적책임을 귀속받는다.
3. 상기 1, 2에 대한 내용에 대한 증거로 위임받는 자와 위임하는 자는 각자 기재날인한다.

년 월 일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위임받는 자와 하는 자는 인감을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3호 서식]

귀중

위 입 장(상해)

□ 계약사항 및 사고내용

보험종목 :

계 약 자 :

사고장소 :

보험목적 & 보험금액 :

□ 위임받으시는 분

성명(상호)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귀사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본 계약의 _____년 _____월 _____일자 _____사고와(피해자 : _____) 관련
된 보험금의 수령권 기타 보험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상기 「위임받으시는 분」에게 위임하며, 이후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가 없
음을 서약하고, 그 증거로서 당사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위임받으시는 분

성명(상호)

(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 위임받는 자와 하는 자는 인감을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배상금 지급 신청서

1. 손해배상청구인(○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2. 청구사유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내용 (6화 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히 기술바랍니다.)	
손해내용	대인상해 :
	재물파손 :

3. 손해배상청구내역

(단위:원)

구분	금액	내용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보상		
위자료		
기타		
재물손해		
계		

[별지 제9호서식]

지방관공선 공제등록증권

공제등록번호 :

관 공 선 공 제 등 록 현 황	선 명				회 원 (자치단체)		기 관 명							
	총 톤 수		톤				주 소							
	선 종						전화번호							
	선 재				관리부서				주 정 박 지	주 소				
	선 박 정 원		명		운항구역					전 화				
	최초등록일				최근사고일					항구명				
	건조년월일 (선 령)		년 월 일 년 월 월		치 수(m) (장×폭×고)				의 장 품		중, 점			
	주 기 관	제작회사 (형 식)		()		보 조 기 관	제작회사 (형 식)		()		공 제 요 율	선박공제		%
		마 력 (HP)					마 력 (HP)					충돌특약		%
		회 전 수 (RPM)					회 전 수 (RPM)					무 사고 인		%
속 력 (노 트)		평속:		속 력 (노 트)			평속 :							
제 년 월 일		년 월 일		제 년 월 일		년 월 일								
재 산 평 가	평가방법		☐ 장부가가격 ☐ 시가 ☐ 평가표 ☐ 기타				공 제 회 비	선박 공제		원				
	평가 금액 (원)	선 체				특약가입여부		충돌 특약		원				
		주 기 관				충돌특약		무사고할인		원				
		보조기관				승선자배상		승선자배상		원				
		의 장 품						계		원				
		계												
선박재산가액(공제가액)				승 선 자 배 상 보 상 한 도 액	보상한도		1인당(만원)		1사고당(만원)					
공 제 등 록 금 액					보증 내용		승선자배상-대인							
							구조비담보-대인							
공 제 기 간	선 박		~				승객외 제3자 대인							
	승선자배상		~				관습상의 비용							
재물손해담보														
위와 같이 지방관공선 및 승선자배상 공제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직인) 회원명 : 귀하														

[별첨 3]

지방관공선 승선자배상 약관

1] 보통약관

제1조 (공제가입) 공제가입은 공제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의 가입신청과 공제회의 공제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2조 (약관의 제공) ①공제회는 공제가입을 신청한 회원에게 약관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②공제회는 홈페이지 등에 약관을 게재하여 회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조 (공제회비) ①공제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이에 대한 공제회비를 공제회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②공제회비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정기가입 신청 : 당해연도 3월 31일
2. 수시가입 신청 : 공제가입 신청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

제4조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보장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 0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공제등록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공제등록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공제회가 회원으로부터 공제가입신청을 받고, 그 신청을 공제등록하기 전에 약관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장을 합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회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가입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지급사유에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공제회가 증명하는 경우
3. 제12조(가입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회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5조 (업무의 분담) ①공제회는 승선자배상공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공제 사고에 대한 업무처리를 손해보험사에 일임할 수 있습니다.

②공제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일임받은 손해보험사(이하 "보험사"라 합니다)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손해조사,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사고에 관련된 소송대행 등을 수행합니다.

제6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공제등록증권상 보장지역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관공선에 탑승한 피해자의 신체에 장애(이하신체장애라 합니다)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공제자가 제19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공제자가 제1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마. 피공제자가 제2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7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이들의 법정대리인, 선장, 승무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승선한 승객이외의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2017.02.10.삭제)
14. 피공제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그 근로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선박이 습격, 포획, 나포 또는 억류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선박 또는 선박에 승강시키는 연락용 선박의 뚜렷한 정원초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

러나 뚜렷한 정원 초과로 생긴 손해가 아님을 피공제자가 입증한 때에는 정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9. 선박 또는 선박에 승강시키는 연락용 선박 이외의 운송용구로 여객을 운송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8조 (의무보험과의 관계)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한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역시 그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이와 동일합니다. 단, 이 공제계약이 의무보험계약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21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공제회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6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6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6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공제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공제회의 보상총액은 공제등록증권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0조 (가입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공제가입시 관공선의 현황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1조 (가입후 알릴의무) ①공제가입이후 공제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회원이나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공제회에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공제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승선자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선박을 양도, 대여 또는 돌려주었을 때
4. 선박의 정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선박의 노선을 변경하였을 때
6.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공제회비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회비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공제회비에 대하여는 제3조(공제회비) 제2항에 따릅니다.

③회원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공제회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회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가입의 해지) ①회원은 피공제자의 폐업 또는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선박의 폐선과 법령 등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공제회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0조(가입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보장을 합니다.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1조(가입후 알릴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4조(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상당한 이유없이 제25조(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공제회가 공제가입신청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공제회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공제회 직원이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가입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⑤ 제3항에 의한 가입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험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3조 (타인을 위한 공제가입) ①회원은 타인을 위한 공제가입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공제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타인을 위한 공제가입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회원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회원은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유지의무) 피공제자는 선박의 내항능력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15조 (가입의 무효) 공제가입을 신청할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공제가입은 무효로 합니다.

1.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공제가입을 신청할 때에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공제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공제가입을 한 후에 승선자배상공제와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6조 (공제회비의 환급) 공제가입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회비를 돌려드립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공제회에 납입한 공제회비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회비
2.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공제회비를 뺀 잔액. 다만, 회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공제회비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7조 (양도)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공제회의 서면동의 없이는 공제회 및 보험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공제회가 서면동의를 한 경우 공제가입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공제회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공제가입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 (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공제회 또는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국가배상심의청구나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손해방지의무) ①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험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공제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보험사의 동의를 받을 일
- ②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제20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 ①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사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보

험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보험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사의 요구가 있으면 회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보험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사의 요구가 있으면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회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험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1조 (보험금의 지급) ①피공제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
 -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보험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②보험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이 기간내에 마칠 수 없고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이상을 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보험사는 제2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보험사는 피공제자가 제1항의 서류 중 기재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일체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2조 (보험금의 분담) ①영조물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보험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②의무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공제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23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공제회비 및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4조 (대위권) ①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보험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보험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5조 (조사) ①보험사는 공제기간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보험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보험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공제기간중 또는 보험사가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공제내용의 교환) 보험사는 공제가입사항의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회 또는 보험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및 지급내용

제27조 (관할법원) 공제가입에 관한 소송은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8조 (약관의 해석) ①공제회 및 보험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공제회 및 보험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29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유 도 선 신체장애 재물손해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을 말합니다. 신체장애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有體物)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보장지역	보장지역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 1)의 국가로 또는 위 1)의 국가에서 위 1)에 해당되지 않은 국가로 여행하거나 수송하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피공제자의 배상책임이 위 1)에 기재된 국가내에서 소송이나 공제회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 내에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① 위 1)의 국가에서 피공제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 사고 ② 위 1)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피공제자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 다만, 공제등록증권상 보장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탈한 경우에 한합니다.
사 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애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매회의 사고	매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매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공해물질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테 러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등을 말한다.

② 특별 약관

① 구조비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관공선승선자배상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19조(손해방지의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해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피공제자가 승객을 구조 또는 수색하기 위하여 직접 지급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을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② 관습상의 비용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공제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피공제자가 보험사의 동의를 얻어 관습상 지급한 아래의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승객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조의금이나 위로금
2. 승객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식대, 숙박비 및 교통비

제2조 (보상한도액) 보험사는 관습상의 비용에 관하여 피해승객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③ 재물손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생긴 사고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선박 내에서 피공제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선박의 하자, 마멸, 부식 또는 자연소모로 생긴 손해. 그러나 피공제자 또는 그 근로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승선한 승객이외의 제3자에게 입힌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승선한 승객으로부터 인도받지 아니한 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지거나 분실 또는 도난됨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피공제자 또는 근로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선박 또는 연락용 선박 이외의 운송용구로 승객의 재물을 운송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공제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공제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4.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피공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재물손해
18. 피공제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위탁재물 명세(위탁재물의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재물종류 : 재물수량 : 위탁자성명 : 기 타 :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
기 타 :

④ 여객외 제3자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보통약관 제6조 (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선박의 운항으로 생긴 사고를 당해 선박에 승선한 여객외의 제3자에게 신체장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